## Ⅱ. 주요개정내용

## 1.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

## 1) 배 경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교량·주차장 등)의 이용과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유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및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sup>2)</sup>의 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9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생활편의품으로 국민 누구나 소유<sup>3)</sup>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새차의 경우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된 차의 경우나 똑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국민적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9년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에서의 헌차에 대한 세금 인하 문제 제기, 1999년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인하하 는 의원입법안 제출, 2000년에는 국회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의 cyber시민토론회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시민공청회가 있었고, 전국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 의회에서도 중고승용차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 등이 있

<sup>2)</sup> 현재까지 자동차세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일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하여 자동차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의 재산세와의 단순비교하여 세부담의 과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sup>3)</sup>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등록통계월보에 따르면 2000.10월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가 11,939,637대(승용자동차는 68%인 8,070,203대)로 2000.2.1현재 가구수 15,442,700, 인구 47,335,257명과 비교해볼 때 1.29가구당 1대(승용차 1.91가구당 1대), 3.96명당 1대(승용차 5.87명당 1대)가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대이상 보유가구가 133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